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 []생산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수입 7일, 생산 15일
------	-----	--------------------

신청인	상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종류 및 용도

수입 또는 생산 시기(연월일)

수입량 또는 생산량(톤 또는 kg)

수입국 또는 생산지역(읍·면·동)

HSK No.(수입의 경우만 해당)

석면조사·분석 기관명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 작성한 석면조사·분석 결과보고서(「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가공·변형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 국내 유통 계획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질 차

